



- 청소년 분야 민간이전사업(위탁금 및 보조금) -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



**감사위원회**

#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금 액 (인원)	비 고
계	22건	징계 1 시정 16 주의 4 통보 1	101,729,290 275,110	회수 환급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13건)			
1	자체 운영규정 위탁기관 승인절차 미준수	시정		
2	시설운영대표자 상근 의무 규정 미준수 및 정년 규정 운영 부적정	시정		
3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 사용시 서명 소홀	시정		
4	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75,237,290	회수
5	채용 전 경력(호봉) 인정 부적정	시정	7,195,980	회수
6	체력단련실 및 천문대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7	수탁 업무 관리 부적정	징계 요구	1명	
8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시정	2,764,320	회수
9	업무추진비 관련	시정		
10	예산 전용 부적정	주의		
11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금 및 보조금 반납 업무 관련	시정	11,506,610	회수
12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대관료 징수 관련	시정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금 액 (인원)	비 고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4건)			
13	자체 운영규정 미수립 및 교통보조비 지급 부적정	시정		
14	보조금 집행과목 부적정 및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책 미강구	시정		
15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시정	1,422,330	회수
16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시정	383,130 275,110	회수 환급
	아산시 청소년단기쉼터(5건)			
17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출결의 누락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18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 및 매출자 사용자 실명 미기재	시정		
19	아산 청소년단기쉼터 입·퇴소 관리 부적정	주의		
20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시정	1,523,290	회수
21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시정	1,696,340	회수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자체 운영규정 위탁기관 승인절차 미준수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현황

구 분	운영위원회 의결일자	법인승인일자	시청제출일자	시행일자	조직(정원)
3차개정	(2013.01.29. 법인 승인요청)	2013.02.07.	-	2013.02.07.	4팀(33명)
5차개정	2015.11.24.	2015.12.14.	-	2015.12.14.	〃
7차개정	2016.11.29.	2016.12.15.	-	2016.12.15.	5팀
9차개정	2018.03.06.	2018.03.23.	2018.03.26.	2018.03.23.	〃

### 나. 위법·부당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는 ‘센터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센터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3.7.23.)’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에는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 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0.6.7. 최

초 위·수탁협약 및 2013.6.7., 2015.6.7. 재위탁협약시 체결한 「아산시청 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자체운영 규정)에 “을”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직원보수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및 직원보수기준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 협약서 및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항을 위탁기관인 시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위원회운영의 효율화 등의 사유로 2013년 운영위원회 운영업무를 수탁기관인 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함에 있어, 운영규정에 동규정의 개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의 3차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규정 제3조에 ‘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인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신설하고, 제63조의 별표(인건비 지급 기준)에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장 승인 등의 적절한 절차 없이, 수탁법인인 ◇◇만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된 후
- 2018.3.23.까지 6차례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15명 내외)에 위탁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나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적정여부 및 실질적인 검토 등이 불가능함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법인의 승인만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운영하여,
- 조직도를 직원의 증원이 용이한 5팀제로만 정하는 등 정원규정의 불완전 및 업무추진비 집행근거 미비, 직원의 정년과 채용 기준표, 경력산정표, 각종 수당 산정근거 등의 불합리,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 등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자체 운영규정을 소홀히 운영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지원담당관**은 센터의 자체운영 규정이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8. 3.26. 제9차 개정사항을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사항 외에는 2013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센터로 이관하였음에도 운영규정의 개정에 대한 승인 등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여 개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수탁기관이 관련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운영대표자 상근 의무 규정 미준수 및 장년 규정 운영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대표자 선임 현황

성 명	수탁단체(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소 속	직	직	재직기간
A	◇◇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관장	2013.03.01~ 2017.02.28.
B	〃	〃	관장	2017.03.01. ~ 현재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현황 - 정년

직급별	제정 (2010.06.07.)	3차 개정 (2013.02.07.)	7차 개정 (2016.12.15.)	비 고 (7차개정-수행업무)
1, 2급	만60세	만60세	만60세	
3~6급	만57세	만57세	만60세	
기능직	만55세	만55세	만60세	전기, 기계, 운전 등
고용직 (계약직)	만65세	만70세	만70세	미화, 식당, 판매, 대외협력 등

### 나. 위법·부당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는 시설의 위탁 운영은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

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원칙은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대표자는 상근으로 '수탁단체 직원이 수련시설 직원의 겸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정년은 해당업무의 특성과 관련 업무에서 근무하는 다른 기관의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정년연령을 고려하여 할 때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고, 정년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한 주요업무 및 예시직업에는 청소년지도사 및 상점판매원, 청소원 등 40여종의 직업명과 전문직 및 단순직 등을 예시직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2010.6.7. 최초 수탁 운영 시부터 전문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청소년교육상담학과 현직교수와 겸직하여 센터의 운영대표자인 관장을 비상근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학교협력관제를 운영함에 있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 아니고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규정을 개정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포함하여 정년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자체 운영규정 제32조에도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면 6.30.이 당연 퇴직 시기임에도 2018.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상근하도록 하여 주시고,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면 6.30.까지 근로 계약해야 하는 운영규정 내용에 맞추어 학교협력관과 재계약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상근 및 정년 규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 사용 시 서명 소홀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기관운영 신용(체크)카드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현황

통 장 명	계	위탁·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금	예수금
카드발급 수량	36	29	3	3	1
보조금결제전용카드	19	18	1	-	-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등록	3	-	1 (2014년 발급)	2 (2013년 발급)	-

○ 일반체크카드 사용 현황 (2013.~2017년)

통 장 명	카드수량(개)	사용금액(원)	포인트 예정금액(원)
계	10	146,648,960	733,244
보조금통장	7	74,279,890	371,399
사업수입금	3	58,845,080	294,225
법인전입금	2	13,523,990	67,620

\* 포인트 예정금액 : 사용금액 × 0.5%

○ 체크카드 사용 내역

사 업 명	건 명	카드결제 일자	지급액(원)	거래처명	매출표(서명)
민간위탁금	센터직원 2017년 중무식 및 2018년 송별회 식비	2017.12.29.	894,000	○○	아청교
민간위탁금	12월분 유류비 지출	2017.12.29.	2,209,000	●●	아청교
사업수입금	미아찾기프로젝트 사진전시용 액자구입비	2017.11.30.	60,000	◎◎	아청교
아산시민참여학교	탐방학교(물환경) 추억만들기 식비 지출	2017.12.10.	73,000	◇◇	(서명~)
아산시민참여학교	탐방학교(송곡도서관) 추억만들기 식비 지출	2017.12.10.	112,000	◆◆	(서명∞)
아산시민참여학교	탐방학교(장영실) 추억만들기 공방도예체험비용 지출	2017.12.15.	320,000	◆◆	(서명@)

나. 위법·부당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의 신용카드 발급절차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관리는 ‘지출원 등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기관운영 관련 36개의 카드 중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발급받아 사용 중인 19개의 카드 외 사

업수입금 카드 등 17개의 카드에 대하여는 일반 체크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발급받은 법인전입금 카드 등 3개는 발급대장에 미등록 되어 있으며,

- 보조금전용카드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보조금에 재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3년간 총 카드사용금액 1,337백만원 중 146백만원을 일반카드로 사용하여 약 733천원의 세입을 누락하였으며, 카드사용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관약칭 또는 간략한 기호 등의 형식적인 서명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발급한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17개의 일반 체크카드를 보조금 전용카드로 교체하고 발급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75,237,290원(회 수)

【지적내용】

**[기본현황]**

1. 아산시에서 위탁받아 ◇◇에서 운영 중인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정규 직원에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특정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기본 10시간)을 [표 1]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 1]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정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기본10시간) 지급현황

(단위:원)

지급연도	대상자 인원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특정업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기본10시간)
합 계		190,542,641	73,682,250	72,553,840	195,221,044
2010.6. ~	13	3,942,701	4,050,000	2,390,000	8,371,134
2011	14	14,370,250	7,660,000	4,200,000	18,751,540
2012	13	19,136,310	8,140,000	9,660,000	21,420,200
2013	14	22,372,360	8,600,000	9,540,000	22,436,430
2014	13	23,045,010	9,030,000	9,352,260	23,488,370
2015	17	28,298,800	10,869,680	11,471,610	28,556,720
2016	19	30,773,160	11,222,570	12,133,540	31,230,290
2017	18	30,467,620	11,080,000	10,806,430	31,249,330
~ 2018.3.	16	18,136,430	3,030,000	3,000,000	9,717,030

2.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2010.6.7.)에 의하면 제 5조(위·수탁기간), 제12조(기본운영계획) 및 제15조(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위·수탁운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sup>1)</sup>으로 하며, ◇◇은 아산시청 소년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아산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직원보수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정하고 공증을 완료하였다.
  
3. 이에 따라 수립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2010.6.)』 제60조에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직원의 봉급은 본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매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봉급 지급에 관한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 [위법부당사항]

### 1.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부적정

- 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 제99조(예산회계관리)에 따라 예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아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일반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나)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근무연수는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1) 이후 현재까지 재위탁 중임

- 다) 또한,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동 사업예산 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면서, 근속수당(정근수당)은 센터 근무경력과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월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월 8만원, 20년 이상은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사업안내』 등에 근거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및 위탁기관인 아산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직원의 각종 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 마)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예산편성 내역에 급여 총액을 합산 표기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만을 거친 후 위·수탁 협약에 따른 아산시의 승인 및 협의 없이 타 지자체 사례<sup>2)</sup>를 참고하여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정기준의 중요 요소인 “근무연수”를 기관(센터) 근무기간 및 군복무기간의 합산이 아닌 “채용 전 경력(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 바) 2012년에는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내부결재(관장 승인)만으로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2013.2.7.)』을 자체 개정하면서 제63조(급여의 계산)와 “인건비 지급기준”을 별첨으로 신설하여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산출기준인 근무연수를 “호봉”으로 산정하여 [표 2], [표 3]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산시에 제출 및 승인되지 않아 인정근거로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지침과 내·외부 사정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음을 경위서를 통해 밝힘

[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지급대상 : 센터 근무 정규직원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산정하되 “미만” 으로 인정함.

[표 3]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표

근무연수	일반직 (기능직포함)	고용직	비 고
20년이상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일반직(기능직)가산금 - 20년이상~25년미만 10,000원 - 25년이상 30,000원 ◦고용직가산금 - 25년이상 20,000원 가산
15년이상~20년미만	80,000원	50,000원	
10년이상~15년미만	60,000원	45,000원	
5년이상~10년미만	50,000원	40,000원	

- 지급대상 : 직원별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산정하되 “이상” 으로 인정함.

사) 그 결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근무연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표 4]와 같이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5년간 재산정 금액 대비 75,237천원을 초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최근 5년간 정근수당 및 가산금 재산정 현황 (세부현황 별첨)

(단위:원)

연 번	성 명	입 사 일 (입사시 호봉)	정근수당 과다 지급액(최근 5년간)	가산금 과다 지급액(최근 5년간)	퇴직금 추가부담액 (최근 5년간)	합 계
합 계			49,766,595	19,683,220	5,787,485	<u>75,237,299</u>
1	A	2010.6.8. (15호)	4,949,874	2,410,000	613,323	7,973,197
2	B	2010.6.8. (10호)	3,935,935	1,410,000	445,495	5,791,429
3	C	2010.6.8. (6호)	2,549,721	450,000	249,977	3,249,698
4	D	2010.6.8. (6호)	2,827,735	510,000	278,145	3,615,879
5	E	2010.6.9. (4호)	3,980,480	1,480,000	455,040	5,915,520
6	F	2010.6.8. (4호)	-	140,000	11,667	151,667
7	G	2010.6.10. (5호)	1,997,645	430,000	202,304	2,629,949
8	H	2010.7.13. (11호)	3,981,245	1,590,000	464,270	6,035,515
9	I	2010.7.13. (5호)	4,375,848	1,610,000	498,821	6,484,668
10	J	2014.4.16. (7호)	2,524,270	1,140,000	305,356	3,969,626
11	K	2013.1. (5호)	1,444,990	1,870,000	276,249	3,591,239
12	L	2015.1. (6호)	2,433,835	1,213,220	303,921	3,950,976
13	M	2015.1. (4호)	1,971,315	1,650,000	301,776	3,923,091
14	N	2015.1. (8호)	3,042,365	1,590,000	386,030	5,018,395
15	O	2017.8. (3호)	247,810	-	20,651	268,461
16	P	2016.2. (6호)	1,752,395	1,300,000	254,366	3,306,761
17	Q	2016.2. (3호)	788,640	150,000	78,220	1,016,860
18	R	2015.8. (3호)	520,445	-	43,370	563,815
19	S	2010.7.1. (12호)	518,875	80,000	49,906	648,781
20	T	2010.6.8. (9호)	3,068,565	360,000	285,714	3,714,278
21	U	2010.6.8. (7호)	2,854,609	300,000	262,884	3,417,493

## 2. 특정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업무 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급구분에 규정된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특정업무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등에 근거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및 위탁기관인 아산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련 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 다) 위 [표 1]과 같이 정규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2010 ~ 2011년에는 타 지자체(서울시) 사례를 기초로 “회계(경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하 정규종사자에게 월 5만원”,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월 3만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청소년사업 담당자에게 월 3만원”, “수련시설 안내 담당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이후 2012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안을 내부결재(관장 승인)만으로 시행하면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사업관련 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의 결정하고, 청소년사업 직접 담당자가 아닌 행정업무 담당자로 확대 적용하여 총괄 관리자인 부관장, 회계(경리)담당자, 서무담당자, 기획운영팀장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라는 이유로 특정업무(청소년사업) 수당 6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등 자격 소지자 정규직원 전원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하게 한 결과, 2011년  
연 4,200천원에서 2012년에는 9,660천원으로 지출예산이 2.3배 증액되었고,

마) 2013년부터는 위 1-바와 같이 정당성이 결여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비사업 담당자 전원에게 특정업무 수당을 지  
급하여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2.9배 증가한 12,133천원을 예산 집행한 결  
과를 초래하였고, [표 5]와 같이 최근 5년간 24,469,680원을 과다 집행하였  
다.

### 3. 시간외 근무수당(기본 10시간) 지급 부적정

- 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2010년 6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직원 채용 시 시간외 근무 10시간에 대하여 기본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나)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의미하며 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는 월 30시간(1일 4시간 이내) 한도 내 지급 가능하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보상휴가(대체휴무)로 지급할 수 있고,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1/209×1.5」에 따라 시간당 임금<sup>3)</sup>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봉급기준액×1/209×1.5」에 따라 시간당 수당을 매년 책정<sup>4)</sup>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회 심의 및 아산시와의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년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안을 내부결재(관장 승인)로 결정하였고, 2013년부터는 위 1-바와 같이 정당성이 결여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하여,
- 마)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당 임금을 계상하면서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도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월 130천원 ~ 270천원을 지급한 결과, [표 1]과 같이 2010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초과 근로와 관계없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95,221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3)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 300만원 인 경우 21,531원

4) 2018년 기준 일반직공무원 6급 11,074원, 7급 10,003원, 8급 8,980원, 9급 8,117원

#### 4. 위탁기관 관리 감독 소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및 위탁기관인 ◇◇의 감독 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은 위탁기관에서 직원보수 기준 등 위탁금 산정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상기 현황과 같이 최근 5년간 지급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75,237,290원을 위탁기관으로부터 회수하시고,
- 앞으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군 경력 및 자체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즉시 변경 조치하시기 바라며,
- 특정업무수당을 청소년 관련 자격을 보유한 모든 직원이 아닌 부관장 등 관리자를 제외한 특정 업무(경리, 안전관리, 청소년 사업 등)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게 적정한 금액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채용 전 경력(호봉)인정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수(7,195,980원)

【지적내용】

가. 기본현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2018년 3월 기준 총 38명(관장 1명, 정규직 17명, 무기계약직 9명, 계약직 11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17명에 대하여 채용 전 경력(호봉)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채용 전 경력 부적정 인정 현황(세부현황 별첨)

(단위:원)

연번	성명	입사일 (입사시 호봉)	경력 기관	부적정 인정기간	과다 지급액 (최근 5년간)	비고
합계	9명				196,034,569	
1	A	2010.6.8. (15호)	석사학위(청소년학)	2년 (2년 중 1년은 2011년 감산)	7,195,980	근거 없음
			◇◇연구소	6월 26일		근거 없음 (비상근)
			◇◇	1년 8월		9,072,599
2	B	2010.6.8. (6호)	◇◇교육원	1년 3월	6,618,720	근거 미약
3	C	2010.7.13. (11호)	○○	8년 4월 8일	55,236,910	근거 미약
4	D	2010.7.13. (11호)	◎◎	4년 10월 9일	36,067,250	근거 미약 (시민단체 경력)
5	E	2011.3.1. (3호)	◇◇ (청소년학과 조교)	2년	6,062,980	근거 미약

연번	성명	입사일 (입사시 호봉)	경력 기관	부적정 인정기간	과다 지급액 (최근 5년간)	비고
6	F	2010.6.9. (4호)	○○, ●●, ◎◎	3년 11월 25일	30,166,460	근거 없음 (사기업 경력)
7	G	2010.6.10. (5호)	□□, ■■, △△	1년 7월 19일	10,337,270	근거 없음 (사기업 경력)
8	H	2015.1.1. (8호)	▲▲, ▼▼, ▼▼	3년 10월 26일	16,596,060	근거 없음 (사기업 경력)
9	I	2014.4.16.	☆☆, ★★	3년 4월 23일	18,680,340	근거 없음 (사기업 경력)

#### 다. 위법·부당내용

1)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2010.6.)』 제62조에 의하면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장이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63조(인정경력)에 따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직원의 임용 시 인정되는 경력은 ①공무원 근무기간 ②청소년수련시설 근무기간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④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⑤군복무경력 중 의무복무기간(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⑥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⑦교육 및 상담기관 등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시설 및 단체의 근무기간 ⑧청소년 관련 학술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6.12.15.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세 부 경력 산정표를 [붙임1]과 같이 신설하였다.

[붙임1]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경력산정표

연 번	직업유형		경력산정
	기관유형	근로유형	
1	공무원	청소년관련 업무	100%
		특수관련 업무(경찰, 소방, 군인)	60%
		일반공무원	60%
2	청소년시설	상근 근로(채용분야 업무)	100%
		상근 근로(채용분야 외 근무)	60%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법인	상근 근로(채용분야 업무)	100%
		상근 근로(채용분야 외 근무)	60%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상근 근로(채용분야 업무)	100%
		상근 근로(채용분야 외 근무)	60%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청소년관련 업무	100%
6	교육 및 상담기관 등 관공서 내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및 단체의 근무기간	청소년관련 업무	100%
7	청소년 관련 학술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	상근 근무자	100%
8	군대	-	100%

2)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직원 경력 산정 기준표를 [붙임2]와 같이 제시하고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붙임2]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직원 경력 산정 기준표

구 분	경 력	환산 비율
전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li> <li>○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단,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된 경우만 인정)</li> <li>○ 군 의무복무경력</li> </ul>	100%
	○ 일반행정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상근 근무경력	
전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 근무 경력</li> <li>○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 경력</li> <li>○ 민간 청소년기관·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li> <li>○ “갑”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에서의 인턴 경력</li> </ul>	50%
	○ 일반행정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인턴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한 근무경력	

3)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2011.2.22.)』 제95조(예산회계관리)에 따라 예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아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일반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에 의하면 호봉 확정 시행권자는 관련 법령 조항에 따라 호봉 확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확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5) 그러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사담당자는 채용예정자가 결정된 후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등을 근거로 상근 여부,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정 호봉을 정하고 자체 심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에도 경력증명서 미제출, 상근 여부 및 담당업무 미확인 사항에 대하여 경력기관 전력조회 없이 예정 호봉을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상급자(관장, 부관장)에게 구두 보고 후 근로계약서에 호봉 확정내역을 기재 및 관인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운영위원회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그 결과, 위 채용 전 경력인정 부적정 인정 현황과 같이 내부 규정(붙임1) 및 관련 기관 경력산정 기준표(붙임2)에 근거 없는 A의 “석사학위”(2년)<sup>5)</sup> 및 “◇◇연구소” 비상근 경력(6월 26일)을 경력증명

---

5) 2010년 입사 시 석사학위에 대한 2호봉 가산 확정 후 2011년 1호봉 감 조정으로 현재까지 1호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서(상근여부, 담당업무) 확인 없이 100% 호봉 인정하여 최근 5년간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및 가산금, 퇴직적립금으로 7,92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나) A의 “◇◇” 경력(1년 8월) 및 B의 “◇◇ 평생교육원” 경력(1년 3월), C의 “○○” 경력(8년 4월 8일), D의 “◎◎” 경력(4년 10월 9일), E의 “◇◇ 청소년학과 조교” 경력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자체 운영규정의 경력인정 근거조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각각 100% 경력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최근 5년간 기본급 및 수당으로 112,329천원을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또한, F의 “○○”, “●●”, “◎◎” 근무경력(총 3년 11월 25일), G의 “□□”, “■ ■”, “△△” 근무경력(총 1년 7월 19일), H의 “▲ ▲”, “▽▽”, “▼▼” 근무경력(3년 10월 26일), I의 “☆☆”, “★ ★” 근무경력(3년 4월 23일)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사기업경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인사담당자의 판단 및 상급자(부관장, 관장) 구두 보고만으로 100% 경력 산정하여 최근 5년간 기본급 및 수당으로 75,780천원을 부당지급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감독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채용 전 경력(호봉)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최근 5년간 인건비로 총 196,034천원을 과다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A에게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 없는 경력 인정으로 과다 지급된 급여 7,195,980원을 수탁기관으로부터 회수하고 호봉을 재확정 하시기 바라며,
- A외 4명(B, C, D, E)의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고,
- F외 3명(G, H, D)의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 없는 채용 분야 사기업 경력에 대해 유사경력 적정 여부를 검토(인정비율 포함)하여 운영규정에 반영하고 호봉을 재확정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수탁 업무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신 분 상】 징계요구  
【지적내용】

### 1. 업무 개요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 예산집행 및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관리자이며, **부관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인사관리의 실무책임자이다.

관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못할 경우 부관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관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판단기준(관계 법령)

#### 가. 자체 운영규정 위탁기관 승인절차 미준수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직원보수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직원 각종 수당 지급 관련

###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근무연수는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 특정업무 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업무 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급구분에 규정된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시간외 근무수당

-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1/209×1.5」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봉급기준액×1/209×1.5」에 따라 시간당 수당을 매년 책정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채용 전 경력(호봉) 인정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2010.6.)』 제62조에 의하면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장이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63조(인정경력)에 따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직원의 임용 시 인정되는 경력은 ①공무원 근무기간 ②청소년수련시설 근무기간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④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⑤군복무경력 중 의무복무기간(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⑥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⑦교육 및 상담기관 등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시설 및 단체의 근무기간 ⑧청소년 관련 학술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에 의하면 호봉 확정 시행권자는 관련 법령 조항에 따라 호봉 확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확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3. 업무 처리 현황

#### 가. 자체 운영규정 위탁기관 승인절차 미준수

2010.6.7. 최초 수탁 시 부터 2012년 센터 운영 초기까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을 위탁기관인 시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등의 사유로 2013년 운영위원회 운영업무를 수탁기관인 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함에 있어,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인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신설하였고, 2018.3.23.까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및 직원보수기준 등을 6차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법인의 승인만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운영하였습니다.

#### 나. 직원 각종 수당 지급 관련

#####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예산편성 내역에 급여 총액을 합산 표기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만을 거친 후 위·수탁 협약에 따른 아산시의 승인 및 협의 없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정기준의 중요 요소인 “근무연수”를 기관(센터) 근무기간 및 군복무기간의 합산이 아닌 “채용 전 경력(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5년간 재산정 금액 대비 75,237천원을 초과 집행하였다.

○ 특정업무 수당

- 2012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내부결재(관장 승인)만으로 시행하면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사업관련 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의 결정하고, 청소년사업 직접 담당자가 아닌 행정업무 담당자로 확대 적용(기존에 없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총괄 관리자인 부관장, 회계(경리)담당자, 서무담당자, 기획운영팀장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라는 이유로 특정업무(청소년사업) 수당 6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등 자격 소지자 정규직원 전원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하게 한 결과, 2011년 연 4,200천원에서 2012년에는 9,660천원으로 지출예산이 2.3배 증액되었고,

- 2013년부터는 정당성이 결여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비사업 담당자 전원에게 특정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2.9배 증가한 12,133천원을 예산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당 임금을 계상하면서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도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월 130천원 ~ 270천원을 지급한 결과, 2010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초과 근로와 관계없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95,221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다. 채용 전 경력(호봉) 인정

○ 인사담당자는 채용예정자가 결정된 후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등을 근거로 상근 여부,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정 호봉을 정하고 자체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에도 경력증명서 미제출, 상근 여부 및 담당업무 미확인 사항에 대하여 경력기관 전력조회 없이 예정 호봉을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 후 근로계약서에 호봉

획정내역을 기재 및 관인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운영위원회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붙임3] 채용 전 경력인정 부적정 인정 현황과 같이 내부 규정에 근거 없는 A의 “석사학위”(2년) 및 “◇◇연구소” 비상근 경력(6월 26일)을 경력증명서 확인 없이 인정하여 최근 5년간 7,92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 A의 4명의 경력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최근 5년간 112,329천원을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B 외 3명의 자체 운영규정에 없는 사기업 경력에 대하여 최근 5년간 75,780천원을 부당 지급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A는 2010. 6. 8.부터 현재까지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인사관리 실무책임자로서 본인의 채용 전 경력(호봉)을 산정하면서 인정 근거가 없는 대학교직원 경력 1년 8월 및 개인 학위 수료기간 2년 7월에 대해 경력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호봉에 반영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인사담당자가 사기업 및 대학 교직원 재직기간 등 채용 전 경력을 근거 없이 인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아산시 승인 없이 자체 규정을 개정하여 급여를 과다 산정하였음에도 예산 집행의 통제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3-가~다의 현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수탁사무 감사) 제2항 및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규정」 제3절(상별) 제52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A에 대해 징계요구(감봉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체력단련실 및 천문대 물품관리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주의요구 / 통 보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체력단련실 불용물품 처리 현황

- 1) 물 품 명 : 트레드밀(러닝머신) 등 12종 90개 품목
- 2) 처분금액 : 177,230천원
- 3) 처리방법 : 아산시 이관 => 수요조사 후 관리전환 및 폐기  
※ 상세현황 별첨

### 나. 천문대 물품관리 현황

- 1) 주망원경 : 작동 불능(구동부 기어이탈 및 벨트이탈, 모터 결합부 들뜸)
- 2) 보조망원경1 : 작동 불능(구동부 벨트마모 파손, 경통부 설계오류 외)
- 3) 보조망원경2 : 작동 불능(구동부 고정장치 볼트체결 불가, 벨트이탈 외)

### 다. 위법·부당내용

- 1)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제2조(시설관리 및 운영) 및 제5조(재산관리), 제20조(보칙)에 따르면 아산시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에게 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탁하며, ◇◇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고, 청

소년수련관 시설(기기 포함)의 변경 및 교체, 폐기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아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설립 시 센터에 구비된 물품목록을 인계 및 이관하였다.

- 2) 그러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자체운영 규정상 물품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12월 스마트체력단련실의 운영을 중지하면서 2-가 와 같이 트레드밀(러닝머신) 등 12종 90개 품목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불용 결정할 물품에 대한 아산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아산시 교육지원담당관에 재 이관하였고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2010년 구입 후 센터로 이관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이관이 미완료된 상태로 있음을 이유로 권한 없이 직접 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 3)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하면 불용결정 요건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으로 규정하였다.
- 4) 그러나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체력단련실 미운영을 이유로 제품별 사용가능 여부 및 수선을 위한 업체 견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불용을 결정하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 트레드밀(러닝머신) 등 체력관리 용품 총 13기, 도고면에 벨트 마사지기 등 13기를 관리전환 하였으나 미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결정하여 폐기물 업체가 수거하도록 하였다.
- 5) 그 결과, 체력단련실 용품의 중고품 매매(고철 처분 포함) 등 공매처분을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입 발생요인을 간과 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6) 또한, 2-나 와 같이 천문대 주요 장비인 주망원경(취득가 119,850천원) 및 보조망원경 2대(취득가 5,000천원)가 2017년 9월 이후 모두 작동 불능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하여 천문대 체험 학습이 불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향후 불용품 처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주의요구), 천문대 주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2,764,320원)

【지적내용】

### 가. 현 황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단위: 원)

연번	성 명	입사일	퇴사일	퇴직적립금 미반납액	비 고
	소 계	3명		2,764,320	
1	A	2011.06.20.	2012.02.29.	730,950	방과후아카데미
2	B	2015.04.21.	2015.12.31.	1,193,270	〃
3	C	2016.01.11.	2016.07.15.	840,100	〃

### 나. 위법·부당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적립한 퇴직금은 반납하여야 함에도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 상기 현황과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A외 2명의 퇴직연금 적립액 2,764,320원을 반납하지 않고 기관 통장에 보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이 보관중인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연금 적립액 2,764,32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업무추진비 관련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업 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 비							
35,188	4,085	13,111	1,647	11,101	976	10,976	1,462	- 운영규정에 직무수행경비 (월50만원)외에 근거 없음 - 지출 적요에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등 근거 없는 용어 사용 - 월 50만원 초과 지출

- 업무추진비(화환)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0	4,449	16	1,900	19	2,049	5	500	- 상급기관에 집행 - 관할외 기관에 집행 - 비유관기관에 집행 - 5만원 초과 집행 (경조사비)

○ 회의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 액	내 용	비 고
7	1,373	- 노사협의회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회의 후 식사 비용 업무추진비가 적정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운영비 지원 및 예산집행) 제6항에 “을”은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하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별표1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으로 규정),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 자체 운영규정에 관장업무수행경비로 월 50만원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9,273천원(관장업무수행경비 포함)을 근거가 없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준보다 21,273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상급기관에 집행할 수 없고, 아산시 관할 유관 기관에 대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화환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관할외 기관 및 비유관기관에 집행하였고,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간담회 등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추진에 따른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회 회의 등 총 7건에 대해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 규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예산 전용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연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소 계	50,000	7,000	52,400	4,600	
1	2016년	35,000	7,000	42,000	-	16.12.09. 승인 통보
2	2017년	15,000	-	10,400	4,600	17.12.06. 승인 통보

###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운영비 지원 및 예산집행) 제6항에 “을” 은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 편람 등)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교육지원담당관 및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 인건비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인건비(2016년 35,000천원, 2017년 15,000천원) 50,000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52,400천원) 및 자산취득비(4,600천원)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 및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금 및 보조금 반납 업무 관련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11,506,61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미반납 현황

(단위 : 원)

연 번	보조사업명	예산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 (C=A-B)	이자발생액 (D)	반납대상금액 (C+D)	정 산 보고일
	소 계	2,040,198,000	2,029,140,348	11,057,652	448,992	11,506,610	
1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금	1,650,000,000	1,644,536,198	5,463,802	298,128	5,761,930	'18. 1. 18.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0,238,000	150,238,000	-	34,598	34,590	18. 1. 10.
3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	30,000,000	30,000,000	-	14,926	14,920	18. 1. 18.
4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6,500,000	5,986,940	513,060	2,657	515,710	18. 1. 18.
5	시민참여학교 업무 추진	190,000,000	184,919,210	5,080,790	95,068	5,175,850	18. 2. 23.
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3,960,000	3,960,000	-	1,163	1,160	18. 1. 10.
7	아산알기프로그램	9,500,000	9,500,000	-	2,452	2,450	18. 2. 8.

※2017년 위탁금 및 보조금

## 나. 위법·부당내용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실적보고)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17조(정산검사)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운영비지원 및 예산집행) 제5항에 “을”은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 전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러함에도,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 상기 현황과 같이 2017년 위탁금 및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면, 지방보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위

탁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이자 포함) 11,506,610원을 반납 받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감사당일 현재까지 반납 받지 않은 위탁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11,506,61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대관료 징수 관련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대관료 징수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6	3,977	27	1,527	32	941	27	1,509	- 가산금 금액 산정 오류 - 불필요 금액 징구(조명, 피아노 등) - 감면 요청 공문 미첨부 - 계산 착오 등 - 감면 증명서류 미첨부(5건) - 미수납(2건, 250천원)

○ 조례 규정 대비 실제 현황

구	분	조례 규정			실제 적용 현황	비 고
		기 준	사 용 료(원)			
			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상시이용	1인/ 1월	15,000	25,000원	※체력단련실 폐쇄 (17년까지 운영)	조례 개정 필요
	자유이용	1인/2시간	1,000	2,000원		
잠재력 테스트실	자유이용	1인/1시간	3,000원	-	미존재	〃
도서실	자유이용		무료	무료	시립도서관 소관	〃

##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용허가) 제1항에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례 제25조(사용료) 제1항에 따라 별표1(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용료)에 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단위 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며, 공연연습·무대설비·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용시에는 당해 기준이용률의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6조(사용료 감면)에 국가 또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관할 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 상기 현황과 같이 1회 2시간(기본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명(스마트홀)·피아노 사용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77천원을 과도하게 부과하였고,
  - ☆☆ 외 4개 기관의 사용료를 면제하면서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 ○○ 아산지회 외 1개소가 청소년 관련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총 250천원의 사용료를 미수납 하였습니다.

○ 또한, 아산시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 감사당일 현재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체력 단련실은 2017년까지 운영하고 현재는 폐쇄되었으며, 잠재력 테스트실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에서 상기 현황과 같이 이용자로부터 과도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면제사유 증명서를 미징구하는 등 대관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체력 단련실 폐쇄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 내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자체 운영규정 미수립 및 교통보조비 지급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8조(사무편람)

- 제1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수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 제2항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제3항에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10-10)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 및 승급제한 기간 등의 징계사항을 위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두어야 하고, 수당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자체규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복무 관련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 종사자 채용 및 승급제한 기간 등의 징계사항을 위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미수립하였고,

- 부득이하게 교통보조비 등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내용 등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당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보조금 예산지출 계획에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별표1과 같이 집행하였으며,

**[별표1 교통보조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1,500	4,800	7,600	9,100
상담복지센터	7,800	2,400	2,300	3,100
CYS-NET	7,200	2,400	2,400	2,400
학교밖지원센터	6,500	-	2,900	3,600

- 기타 복무, 회계, 문서 등 자체 규정(편람)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관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 위탁사업자가 자체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교통보조비를 위탁금 예산 편성(안)에 포함하여 신청하였으면 검토하여 제외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의 기타 복무, 회계, 문서 등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을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 집행과목 부적정 및 임차보증금 채권확보책 미강구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2016년)

- 예산 성립 및 보조금 지급 현황

예산 과목		사 업 내 용	예산액(천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지원	32,000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밖지원센터 이전 사업	70,000

- 보조금 지출 현황

예산 과목	집행 내용	지출금액(원)	거래처명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	소 계	30,646,400	
	임대보증금	10,001,000	○○
	임대료 및 관리비	5,283,000	○○
	운영비	15,362,400	●● 외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	소 계	65,353,600	
	인테리어 공사	38,875,500	◎◎ 외
	사무실 및 교육장 설비	26,478,100	□□ 외

###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 및 과목구분에 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의 편성을 금지하고 있고,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임차계약 시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교육지원담당관은 ‘2016년 아산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사업’ 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에 32백만 원의 예산을 성립하여, 2016.6.21. 아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10백만원 등 운영지원금으로 32백만원을 신청 받아 교부하였으나, 자본형성적 경비인 임차보증금을 민간위탁금에서 교부하고자 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예산 전용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교부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 아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유한회사 대정드림과 임차보증금 10백만원과 월임대료 8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전세권설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에 따른 상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및 냉난방시설,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65백만원을 집행하고 2017.1.11.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향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1,422,33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1년 미만 퇴직자 현황

성 명	입사일	퇴사일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A	2015.03.02.	2015.12.31.	1,422,330원

나. 위법·부당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적립한 퇴직금은 반납하여야 함에도

-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A에 대한 퇴직연금 반환금 1,422,330원을 반납하지 않고 기관 통장에 보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이 보관중인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액 1,422,33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383,130원) / 환 급(275,110원)  
【지적내용】

### 가. 현 황

- 사회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원)

‘15년 1월~’ 17년 12월			감사대상의 기간(~ ‘14.12월) 금액(B)	총 초과공제액 (A+B)	비고
고지금액	공제금액	초과 공제액(A)			
116,331,110	116,896,110	565,000	93,240	658,240	※ 초과공제액(A) 내역 사용자(289,890원) 근로자(275,110원)

### 나. 위법·부당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따라 사회보험 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고,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문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지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된 보험료 금액대로 정확히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 상기 현황과 같이 감사 대상기간(2015년 1월 ~ 2017년 12월) 동안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금액보다 565,000원(사용자 289,890원, 근로자 275,110원)을 초과하여 공제하였고,
  - 감사대상 이전 기간(~ '14.12월)에 발생된 93,240원을 합하여 총 658,240원을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상기 현황과 같이 사용자 초과공제액(289,890원)과 감사기간 이전 초과공제액(93,240원)을 회수 조치 하시고, 근로자 초과공제액(275,110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험 공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출결의 누락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단기슭터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 보조금 집행 현황

건 명	지출 일자	지급액(원)	지급방법	거래처명	비 고
기타 강사료	2017.11.30.	200,000	계좌이체	A	영수증 누락
집단상담 강사료	2017.11.30.	300,000	〃	○○	영수증 누락
정수기 대여료	2017.11.20.	54,900	자동이체	●●	세금계산서 (47,580원)
1월 프린터 임대료	2016.12.22.	60,000	계좌이체	B	세금계산서 누락
전기누전차단기 교체비	2016.08.19.	50,000	〃	◎◎	영수증 누락
도시가스공사 설치비	2016.10.07.	350,000	〃	◆◆	간이영수증
홍보 리플릿	2016.12.15.	495,000	〃	□□	지출결의 누락
치과 진료비	2016.03.15.	19,100	〃	△△	영수증 누락, 지급인(도은숙)
치과 진료비	2016.03.02.	17,700	〃	〃	〃
하반기 소득세 및 주민세	2015.12.29.	87,780	현금	-	영수증 누락

##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이며,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산 시 증빙서류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을 간이과세자 및 면세자 등은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청소년 사업안내(여성가족부)’ 에는 시설의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예산사용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으로 아산시청소년쉼터에서 쉼터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체크카드 사용하고,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정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나,
- 2017.11.30. 2건의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출석자료 등 적정한 지출증빙서와 청구서 또는 영수증 없이 집행하였고, 2017.11.20. 정수기 대여료로 47,580원(세금계산서)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7,320원이 증액된 54,900원이 자동이체로 지급되었으며, 2016.12.22. 프린터 임

대료 외1건을 집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를 누락하였습니다.

- 또한 2016.10.7. 집행한 도시가스공사 설치업체인 ▽▽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만으로 지출하였고, 2016. 12.15. 홍보리플릿은 지출결의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만 계좌이체 하였으며, 2016.3.15. 외1건의 치과진료비는 수취인이 정당한 채주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2015.12.29.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영수증을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 및 매출자 사용자 실명 미기재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단기슭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 체크카드 발급 현황

카드(사용)명	계	운영비보조금	역량강화사업	기타 사업	자부담
카드발급 수량 (개)	8	2	2	3	1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2	2	×	×	×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 작성	-	-	-	-

#### ○ 체크카드 사용 내역

건 명	카드결제 일자	지급액(원)	거래처명	매출표(서명)
티셔츠 외 피복비	2017.03.04.	151,600	☆☆	옥련
제주도 힐링캠프 식사	2017.07.15.	110,000	★★	√
입소생 이미용비	2017.10.18.	40,000	○○	○
겨울의복 구입비(티셔츠)	2017.11.06.	235,000	●●	옥련
소독비	2017.12.05.	110,000	◎◎	옥련

## 나. 위법·부당내용

- 청소년쉼터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29조 및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의 신용카드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별도의 일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클린카드(Clean Card)」를 보조금전용 공용카드로 발급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용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며,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관리는 ‘지출원 등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으로 아산시청소년쉼터에서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8개의 기관 운영 체크카드를 발급 사용함에 있어, 쉼터 생활자의 이·미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카드를 제외하고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발급한 카드에 대하여는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 운영카드 8개중 2개에 대하여만 보조금전용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며 이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용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쉽터 명칭 또는 간략한 표기 등 형식적인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발급한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체크카드를 보조금 전용카드로 교체하고 발급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아산 청소년단기쉼터 입·퇴소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단기쉼터

【행 정 상】 주의요구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입·퇴소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퇴소 횟수	합산 개월수	거주지역	최종 재입소 사유	비고
1	A	99.01.01.	6	16	아산시	가정폭력	
2	B	97.11.18.	9	19	서산시	일탈 및 비행	
3	C	99.01.16.	8	11	전북 고창군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4	D	00.06.06.	13	40	아산시	부모간의 갈등/폭력	
5	E	99.10.17.	12	39	〃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6	F	97.07.18.	11	32	예산군	부모 외 가족 간의 갈등	
7	G	96.06.03.	7	21	아산시	주거지 상실에 따른 입소	
8	H	97.11.02.	11	36	〃	부모 외 가족 간의 갈등	
9	I	97.07.26.	6	10	천안시	부모와의 갈등	
10	J	99.01.23.	12	40	아산시	일탈 및 비행	
11	K	01.06.16.	4	16	〃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 세부현황 별첨

## 나. 위법·부당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 정의하였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단기 쉼터의 경우 보호기간은 3개월로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9개월 까지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에 의하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른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쉼터 이용청소년 보호기간 연장 및 서비스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아산시청소년단기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A 외 10명이 보호기간 최대 연장 기간인 9개월 이상을 보호하면서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다수 해당됨에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생략하고 입소를 허가하였다.

- 또한,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아 입·퇴소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교육지원담당관은

- 향후, 청소년의 보호 연장승인 등 입·퇴소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걸쳐 결정하는 등 입·퇴소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미반납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단기슭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1,523,290원)

【지적내용】

### 가. 현 황

○ 1년 미만 퇴직자 현황

성 명	입사일	퇴사일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A	2010.02.01.	2010.05.31.	1,523,290원
B	2010.06.11.	2011.04.30.	

### 나. 위법·부당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적립한 퇴직금은 반납하여야 함에도
- 아산시 청소년단기쉼터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A외 1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1,523,290원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적립금 통장에 보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수탁기관이 보관중인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액 1,523,29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보험료 공제 부적정

【부 서 명】 교육지원담당관

【관계기관】 아산시청소년단기슭터

【행 정 상】 시정요구

【재 정 상】 회 수(1,696,340원)

【지적내용】

### 가. 현 황

- 사회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원)

‘15년 1월~’ 17년 12월			통장잔액(B) (2014년 12월분 납부 후)	총 초과공제액 (A+B)	비고
고지금액	공제금액	초과 공제액(A)			
31,395,190	31,831,440	436,250	1,260,090	1,696,340	고지금액 초과 공제

### 나. 위법·부당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따라 사회보험 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고,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문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지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아산시 청소년단기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된 보험료 금액대로 정확히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 상기 현황과 같이 감사 대상기간(2015년 1월 ~ 2017년 12월) 동안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금액보다 436,250원을 초과하여 공제하였고,
  - 동일한 업무처리가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2014년 12월분 사회보험료 납부 후 잔액 1,260,090원을 포함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1,696,340원의 잔액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 【처분요구】

### 교육지원담당관은

- 상기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초과공제액(436,250원)과 감사기간 이전 초과공제액(1,260,090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험 공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